

●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 제2026-48호

2026년 6월 29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08월 12일

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

시정권고 재결공고[부산해심 제2026-012호(어선 제3성화호 선원부상사건)]

사 건 명 : 어선 제3성화호 선원부상사건

피요청자 : 김**(***** ** ***)

경*** ** * ***** ** *

귀하가 소유한 어선 제3성화호가 2025. 7. 10. 06:55경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소월도 남서방으로 약 1해리 떨어진 북위 34도 45분 56초·동경 128도 26분 39초 해상에서 선박 간 계류 작업 중 우현 중앙에 위치한 계류 비트가 손상·탈락되면서 작업 중이던 선원이 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.

이 선원부상사건은 선장이 출항 전 점검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지만, 소유자인 귀하가 제3성화호 계류설비의 설치,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.

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, 어선 계류설비의 설치, 관리를 철저히 하고, 선단 내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